공 개

의안번호	제 290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의결사항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1. 의결주문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 검사기간 : 2024.7.23.~7.26. (4영업일, 서면), 2024.8.26.~8.28.(3영업일, 현장)

3. 주요골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 예치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 보험 가입·준비금 적립 등 의무,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를 위반한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2차,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2025.8.26., 9.9.) 심의필

○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별지>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오션스 주식회사 : 과태료 330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 위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이하 '예치금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국채·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등

○ 서면검사 착수일(2024. 7. 23.) 현재 오션스 주식회사*는 이용자의 예치금 367,236,559원**을 A은행 및 B(이하 '관리기관 등')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면서 해당 관리기관 등과 예치금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2021. 12. 9. 수리) 되어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를 운영하던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영업 종료(2024. 3. 16.)를 선언하였고, 그럼에도 이용자의 자산 반환 및 재단 이전 등 금융당국이 제시한 영업종료 절차를 미이행 중이며, 2024. 12. 8. 사업자의 지위가 만료됨

** 2024. 7. 19. 기준, 예금계좌 잔액 474,128,739원 中 이용자 예치금 367,236,559원

1) A은행　예금계좌(ㅇㅇㅇㅇㅇ)：　15,929,070원
2) B† 예금계좌(ㅇㅇㅇㅇㅇ)：458,199,669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관리기관에 미해당

< 관련규정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제3조

나. 보험 가입·준비금 적립 등 의무 위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다만,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동 조치만으로 동 조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이 가능함에도

*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으로 아래 1), 2)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1)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30억원.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5억원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신탁

○ 서면검사 착수일(2024. 7. 23.) 현재 오션스 주식회사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금 적립은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불가능하였으나, 보상한도 5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대신 C은행 예금계좌(ㅇㅇㅇㅇㅇ)에 505,178,785원을 예치하는 것만으로 갈음하

여 조치하였음

* 2024. 6. 30. 기준, 자산총계 약 19억원, 부채총계 약 48억원, 자본총계 약 △29억원

** MAX(인터넷과 분리되지 않은 이용자 자산(0원), 30억원 또는 5억원†) = 5억원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로 코인마켓거래업자(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 2024. 7.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의무보험 상품이 출시 및 판매 개시되었고, 코인마켓거래업자의 경우 보험료 연 5천만원(요율 약 10%) 납입 필요

< 관련규정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2조
3.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

다.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위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현재(2024. 7. 31.) 기준 오션스 주식회사는 이더리움(ETH),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舊. 리플) 등 20종에 대하여 자기의 가상자산 약 2,760,431개(약 4.3억 원*)과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약 21,509,484개(약 21.4억 원**)를 분리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 지갑***에 혼장하였음

* 전체 자기의 가상자산 28종 5,450,547개(약 5.08억 원)의 85.3%

** 전체 이용자의 가상자산 22종 26,290,532개(약 21.4억 원)의 99.9%

*** 사업자 고유 가상자산을 이용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에 보관

< 관련규정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붙임>

관계 법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생략)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 (생략)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치금의 보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예치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가.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은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다.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③~④ (생략)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8조에서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3.~6. (생략)

② (생략)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가상자산시장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호	3,000
나.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2호	3,000
다.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3호	10,000

【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

제3조(예치금의 운용) ① 영 제8조제2항제2호나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제10조(보험의 가입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만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다.

1.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 준비금 적립
3.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30억원.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금전을 예치·신탁하는 경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의 관리와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방법·절차 등의 준용)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2020. 5. 13. 개정)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 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생략)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9) (생략)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감독국
연 락 처	02-2100-1657	02-3145-8323